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08월 01일

다산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67-01-1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	거주불명등록 --
임**	임** 1988-11-03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	거주불명등록 --